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8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김용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
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박춘선, 윤종복,
이봉준, 이성배, 이은림,
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
정준호, 최민규, 허 훈,
황철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규모에 따라 토질·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토질·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포함토록 함(안 제12조의2).
- 나. 제12조의2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하고, 이 경우 시장은 제12조의2의 적용으로 증가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부칙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, 건설기술 진흥법
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지반안전을 위한 기술인의 배치 등)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착공 후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토질·지질 분야의 기술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.

1. 특급기술인: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
2. 고급기술인: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12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도 적용되며, 이 경우 시장은 제12조의2의 적용으로 증가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2(지반안전을 위한 기술인</u> <u>의 배치 등) 시장이 발주한 지하</u> <u>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</u> <u>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착공 후 굴</u> <u>착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상주 건</u> <u>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「건설기</u> <u>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</u> <u>른 토질·지질 분야의 기술인을 다</u> <u>음 각 호와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.</u> <u>1. 특급기술인: 굴착깊이 20미터</u> <u>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</u> <u>2. 고급기술인: 굴착깊이 10미터</u> <u>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</u>
<u><부 칙></u>	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</u> <u>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경과조치) 제12조의2 개정 규</u> <u>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</u> <u>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</u> <u>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도 적용</u> <u>되며, 이 경우 시장은 제12조의2</u> <u>의 적용으로 증가한 건설사업관리</u> <u>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</u> <u>있다.</u>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(경과조치)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(경과조치)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12조의2의 적용으로 증가한 건설사업관리비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